

# 「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」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3월 6일, 박춘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5년 4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5년 4월 7일 상정 ·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박춘희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(안 제4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교육·홍보 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###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### 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### 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부.

# 「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### 2. 제안이유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(안 제4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교육·홍보 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,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 군수는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명시함.
- 안 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, 피해 지원 관련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## 불임 관계 법령

### 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0. 16.>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  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  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  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 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  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  8.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□ 여성폭력방지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7. (생 략)

## 불임 참고 자료

### □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[2023.10.6] 외 123건

(관내 3곳: 강원특별자치도, 속초시, 원주시)

#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## (박춘희 의원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96 |
|----------|-----|

발의 연월일 : 2025년 3월 6일  
발의자 박춘희 의원  
찬성자 남진삼, 김광성, 이창열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
(안 제4조관련)

나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(안 제5조관련)

다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교육, 홍보(안 제6조관련)

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관련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1. 16. ~ 1. 24.(의회사무과-359), 의견없음.

##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디지털성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5조의2의 행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행위
-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·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
4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**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,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·법률 지원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,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
5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**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,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·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o)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

**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**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0. 5. 19. >

**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**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 >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 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 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 >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20. 5. 19. >

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신설 2020. 5. 19. >

-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**①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>
-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>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>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24. 10. 16.>>
-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加重한다.<신설 2020. 5. 19., 2024. 10. 16.>>

[본조신설 2020. 3. 24.]

- 제14조의3(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**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,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4. 10. 16.>>
-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加重한다.

[본조신설 2020. 5. 19.]

##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- 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**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-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- 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- 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- 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2020. 6. 2., 2023. 4. 11.>
-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-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신설 2020. 6. 2.>

[제목개정 2020. 6. 2.]

- 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**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

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
2. 제2조 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#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9. 15., 2016. 3. 22., 2018. 6. 12. >

1.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,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·법률 지원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,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
5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,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·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    |
| 연락처 | (033) 330 -2502 |